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앓고 있는 상병(傷病)의 상태와 예후 및 향후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 행위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인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존엄한 삶의 마무리
연명의료계획서



■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연명의료)을 유보(시행하지 않는 것)하거나, 중단(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8. 2. 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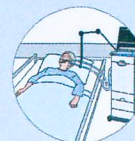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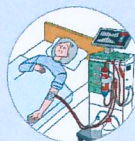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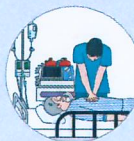
■ 연명의료중단 항목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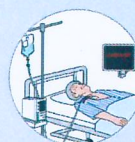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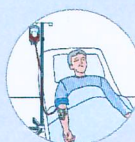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기타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방법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